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19가단52468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¹⁾는 2014. 5. 29.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자동차할부금 56,000,000원을 이자율 연 7%, 원리금 60개월 균등상환,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은 E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E, C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0651), 2015. 5. 12. ‘E, C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50,331,674원 및 그 중 48,793,674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5. 19. E 및 C에게 송달되어 2015. 6. 3. 확정되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5. 21.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10. 16. E 및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데, 위 각 통지는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마. E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9. 10. 14. 기준 23,852,702원(= 원금 16,100,284원 + 인수이자 5,913,016원 + 인수후이자 1,839,4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C에 대한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C이나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가 아닌 원고의 2019. 10. 18.자 이 사건 소제기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5. 21.자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입증은 양수인이 하여야 하나(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가 2019. 10.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제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 상 명백한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또는 그 상속인은²⁾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³⁾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 C과 피고의 사해의사

C이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막연히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선의항변을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C과 피고의 관계, 대금지급 유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이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7. 3.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평의 원칙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72,317,024원인 사실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변론종결일 현재 피보전채권이 원고가 구하는 24,000,000원을 초과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130.4 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대 19610 m²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 19610000 분의 42003

1) 2015. 3.경 상호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2) C은 2015. 11. 17. 사망하였다(갑 제6호증).

3) C의 상속인 H이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74)을 받을 당시 신고한 상속재산 중 C의 적극재산은 밀양시 I 답 501㎡ 등 토지 3필지, 2005년식 자동차 1대, 예금채권, 출자금채권 합계 약 610만 원뿐인데, 근저당권, 압류 등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위 재산 외에도 밀양시 J 대 2,139㎡ 등 부동산 6개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 역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